

경상남도 공고 제2011-236호

2011년도 경상남도 「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」 신규지원 계획 공고

경남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중 「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」에 대한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3월 31일
경 상 남 도 지 사

1. 사업내용

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창업 후 1년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수요자에게 1년 이내 단기간의 상품개발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·무이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,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으로 평가 시 도비 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

2. 지원대상

- 대 상 : 경남 도내 소재 중소기업
- 대상기술
 - 4대전략산업분야(RTRM) :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지역산업기술 지도(RTRM)를 참조하여 주관기관(기업)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
 - 특화산업분야(비RTRM) : 중소기업 1사1기술(기계분야), 신재생에너지, IT융합 분야의 주관기관(기업)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

지원분야		신규지원 대상기술	비 고
4대 전략 산업	지식 기반 기계	○ 특수선박 및 선박용 부품·기자재 기술 ○ 메카트로닉스 유닛 및 시스템기술 ○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○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기술	RTRM
	로봇	○ 자동차 및 일반기계분야/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/장비산업 분야의 로봇기술	
	지능형홈	○ 홈 시큐리티, 홈 오토메이션,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	
	바이오	○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기술 ○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(의료기기 분야)기술분야	
특화산업		○ 중소기업 1사1기술분야(기계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) ○ 신재생에너지분야 ○ 융합 IT분야	<u>비RTRM</u>

3. 지원내역

- 지원규모 : 23억원(과제당 1억원 이내/1년 이내)
- 개발기간 : 1년 이내
- 도비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
주관기관 유형	기술개발 참여기업 구성	도비지원기준	민간부담금 현금비율
중소기업	○ 단독개발(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)	총사업비의 75% 이내	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	○ 공동개발(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/3 이상)		
	○ 공동개발(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/3 미만)	총사업비의 50% 이내	

※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됨

※ “중소기업”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

※ 주관기관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 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신규로 학·석·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와 접수마감일 이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학·석·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

- 기술료(정액기술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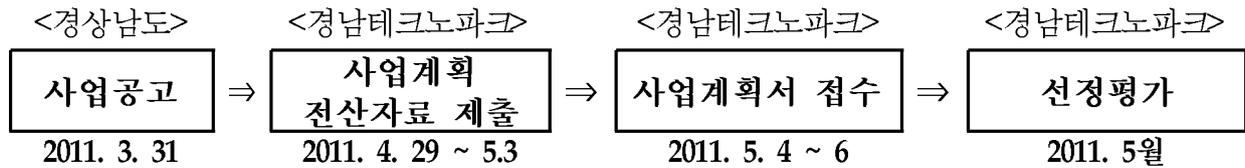
- 개발사업 종료 후 “성공”으로 평가된 경우 총 지원 도비의 20%를 납부

주관기관 유형	기술료율	비 고
중소기업	총 지원 도비의 20%	정액기술료

4. 신청자격

- 주관기관 :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(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미만)이고, 공장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
다만, 소프트웨어기업, 공업디자인서비스기업, 제조서비스기업, 소기업(제조업에 한함) 및 벤처기업은 등록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- ※ “소기업”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에 정한 기업을 말함
- ※ 접수관련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.
- 참여기관 : 경남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경남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, 테크노파크, 지역기술혁신센터,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 등
- ※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%이상을 부담해야 함
- 위탁기관 : 경남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지역특화센터의 법인, 테크노파크, 지역혁신센터 등

5. 지원절차 및 일정



6. 전산자료 제출 및 신청서 교부·접수

○ 전산자료 제출

- 전산자료 제출기간 : 2011. 4. 29(금) ~ 5. 3(화) 24:00까지

⇒ 전산자료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(기반육성) 요약서 및 신청기관 기초현황

- 전산자료 제출방법 : 웹하드(<http://gnriea.webhard.co.kr>)의 [GUEST폴더]의 [올리기 전용] 폴더로 업로드(아이디 : gnriea, 암호 : 1234)

※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일전(2011. 5. 3.)까지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,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

※ 전산자료는 필히 신청기관(기업)명으로 작성하여 제출

○ 신청서 교부·접수

- 신청서 교부기간 : 2011. 3. 31(목) ~ 2011. 5. 3(화)

- 신청서 접수기간 : 2011. 5. 4(수) ~ 5. 6(금), 09:00 ~ 18:00

- 신청서 접수방법 : (재)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방문제출(우편접수 안함)

○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의 원본 1부 및 사본9부(사업계획서 CD1매, 요약서 1부)

-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- 주관(참여)기관 및 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

- 공장등록증 사본(각 참여기업) 1부

-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(단, 해당기업에 한함)

-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

-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

7. 유의사항

○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

- 정부지원 연구사업에 기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

- 경남지역 TP·대학 내 RIC·지역특화센터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
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회(시간)이상 경남지역 TP·RIC·지역특화센터의 장비사용실적이 있는 경우

- 경남지역 TP·RIC·지역특화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(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)

- 경남 4대 전략산업 분야 중 에너지·환경기술 등이 융합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, 경남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신규로 학·석·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와 접수마감일 이후 신규로 학·석·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
- 외국연구기관·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의 경우
-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(참여기업)이 대기업(중견기업 포함)인 공동개발의 경우
- 창업 7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인 신생기업
-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
-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·학, 산·연, 산·학·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
-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지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
-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% 이상인 경우
-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
 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
 -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
 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 -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%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미만인 경우
 -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(운영지침 참조)
- 다음의 경우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
 -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·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
 -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
 -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
 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,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

-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 -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,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○ 문 의 처

- 경상남도 홈페이지(www.gsnd.net) 공고
- (재)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

기관명	주소(우편번호)	전화번호	홈페이지
(재)경남테크노파크/ 지역산업평가단	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-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2층 207호(641-465)	055-259-3403~4	www.gntp.or.kr [사업공고] 참조